

憲法改正案賛成討論

黨의 議員입니다.

지금 議員으로부터 憲法改正案에 대하여 몇가지 點을 指摘하는 反對討論이 있었음이다마는 本議員은 지금 上程審議되고 있는 이 憲法改正案이 우리 憲政史에 있어서 아주 重要하고 紀念碑的인 歷史的 意義를 갖고 있다는 것과 아울러 反對討論에서 提起된 事項에 대하여 本議員의 意見을 말씀드리면서 이 憲法改正案에 대한 賛成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憲法이 1948年7月17日 制定·公布된 이후 그동안 우리가 經驗한 8차례에 걸친 改憲의 動機와 過程의 歷史 現實에 비추어 볼때에 이 憲法改正案이 우리 憲政史에서 갖는 歷史的 意義를 다음과 같이 說明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이 憲法改正案은 우리의 政治發展에 새로운 章을 여는 政治的 意義를 갖고 있습니다. 第12代 國會議員選舉인 지난 2.12 總選 이후 改憲問題를 둘러싼 國論分裂과 政局의 不安 및 社會的 混亂등 끊임없이 계속된 緊張속에서 우리 政治現實의 病的인 弊端인 相互不信과 對立의 政治를 克服

하고 民主政治의 基本인 調和와 妥協의 政治를 이루고자
술한 迂餘曲折과 陳痛을 거쳐 與野가 함께 만들어 낸 이
憲法改正案은 그동안 國民 모두의 끝없는 忍耐와 勇氣 그
리고 智慧에 의하여 이루어 낸 大結實이며 우리의 진정한
民主發展을 위한 우리 모두의 希望과 國民的 興望 그리고
國民的 意志가 表現된 改憲案이고 결코 우리가 過去 經驗
했던 바와 같은 執權勢力의 恣意에 의해 만들어진 改憲案
이 아니라는 點에서 이 憲法改正案은 우리의 民主發展에
劃期的 轉機를 이루는 歷史的 意義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憲法改正案은 우리나라 憲政史上 처음으로 自
由로운 雰圍氣에서 國民의 뜻에 맞는 改憲案을 마련하고자
與野 各政黨間의 改憲協商節次와 改憲案起草를 위한 國會憲
法改正特別委員會의 活動을 거쳐 만들어진 案을 與野議員
共同으로 發議·提案한 것으로 改憲案의 起草·成案過程에서
國民的 合意를 導出하는데 필요한 民主的 節次를 거쳐서
만들어진 改憲案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國民大和合的 見地에서 이루어진 大統領
直選制改憲을 受容하는 6.29 宣言 이후 國會憲法改正特別委
員會에 提出된 各 政黨의 改憲案試案間에 나타난 差異點을
可及的 빨리 效率的으로 調整하고자 各 政黨의 代表들에
의하여 改憲案試案에 대한 協商이 이루어져 各政黨間에 改

憲要綱에 대한 合意가 이루어 졌고 이에 따라 國會內的
各 政黨소속 議員들로 構成된 憲特에서 各 政黨間 合意改
憲要綱을 基礎로 하여 憲法改正案을 起草 憲特全體會議에서
滿場一致로 採擇 本會議에 報告된 바 있으며, 이 憲法改正
案은 이와 같은 節次를 거쳐 만들어진 案을 與野議員 共
同으로 發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憲法改正案은 各 政黨間 改憲要綱協議過程에서
一部條項에 관하여 모든 政黨의 見解를 全部 受容하지 못
한 部分은 있으나 우리가 겪어온 改憲先例와는 달리 最小
限 모든 民主的 節次를 거쳐서 與野 各政黨의 對話와 妥
協에 의해 만들어진 우리 憲政史上 最初의 첫 與野合意에
의한 改憲案이라는 데에 또한 歷史的 意義가 있다고 하겠
읍니다.

세째로, 이 憲法改正案은 改正目的에 있어서 그 指向하고
있는 目標를 民主主義 定着을 위한 權力分散裝置의 制度化
와 國民의 基本權伸張에 力點을 둔 우리 憲政史上 가장
實質的인 憲法을 만들려는 努力이 깃들어 있는 改憲案이라
는데에 또한 重要的 憲政史的 意義가 있다고 하겠읍니다.

즉 이 改憲案은 大統領直選制를 採擇한 外에 우리 憲政史
의 現實에서 經驗해온 바와같은 權威主義的 體制와 長期執
權의 弊端을 방지하기 위해 大統領의 權限縮少와 單任制를

그 內容으로 하고 있고 純粹한 大統領中心制를 指向, 三權分立을 철저히 制度化하기 위하여 現行의 議院內閣制的 要素를 除去함과 아울러 相對적으로 立法府의 地位를 強化하여 政府와 國會間의 權力均衡을 이루도록 하며 우리 國民의 成熟된 民主意識을 勘案,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最大限 伸張하여 公權力의 濫用으로 부터 國民의 基本權이 最大限 實現되도록 制度的裝置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憲法改正案은 우리 大韓民國 憲政史上 類例 없는 國民의 民主化 意志를 反映한 改憲案이며 國民으로부터 永久히 支持와 信賴를 받을 수 있는 民主主義로의 大轉換을 約束하는 改憲案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 憲法改正案에는 지나온 우리의 憲政經驗에 비추어 볼때에 우리 政治社會에 커다란 轉換을 이루는 重要的 歷史的 意義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強調하면서 우리가 이 憲法改正案을 贊成·支持하는 理由와 當爲性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아울러 反對討論에서 指摘된 事案에 대하여 本議員의 見解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憲法前文에 “弘益人間的 開國精神” “信託統治反對 運動의 民族自主精神” 그리고 “6.25 動亂에서 發顯된 自由 守護精神”의 繼承을 插入하여야 한다는 意見에 대하여 말 씀드리겠습니다.

憲法前文은 그 憲法의 指導理念과 指導原理를 밝히는 憲 法典의 一部로서 實質적으로 憲法前文의 精神은 그 憲法의 內容에 대하여 規範的 效力을 갖는 最上位 規範으로서 憲 法의 모든 條項의 基礎的 前提가 되는 것이므로 憲法前文 을 두고 있는 나라의 例에서 보더라도 前文에 그 憲法制 定の 目的과 動機만을 간략하고 抽象적으로 規定하는 경우 가 많고 具體적인 歷史的 事實의 나열은 하고 있지 아니 하는 것이 原則인 것입니다.

따라서 歷史的 評價가 내려져 國民的 合意가 이루어지고 憲法의 指導理念으로서의 價値가^{있는} 歷史的 事實이외의 具體的 事實의 摘示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한 憲法前文의 內容은 將來에 대하여도 妥當하는 前向的이어야 한다는 것이 一般 的인 見解임을 考慮할 때에 위의 歷史的 事實을 모두 前 文에 表現하는 것은 問題點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法院의 判決에 의해서만 保安處分이 可能하도록 해야 한다는 見解에 대하여 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保安處分制度는 1972年12月の 第7次改正憲法(維新憲法)에서 처음으로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保安處分을 받지 아니한다”고 規定하여 (~~從前에 없던~~) 保安處分制度가 憲法上 根據를 갖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一定한 罪를 犯하고 再犯의 危險性이 있는 者로서 特殊한 教育改善 및 治療가 必要한 者에 대하여 身體의 自由를 制限하는 保安處分을 할 수 있도록 社會安全法과 社會保護法이 制定 施行되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保安處分制度에 관하여는 그동안 法院의 判決에 의하지~~
~~身體의 自由를 制限할 수 있어~~ ^{해야 하는 것} ~~人權유린의 소지가 있고~~ ^은 ~~保安處分制度가 政治적으로 惡用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폐~~
~~하던가 刑의 宣告에 의해서만 可能하도록~~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는 指~~
~~摘이 있어~~ ^{있었던} ~~것도 事實입니다.~~

그러나 ^{반대사실등에 관} ~~한편~~ 우리나라가 處해 있는 特殊狀況을 고려할때 ~~保~~
~~安處分은 國家非常時 迅速히 處理되어야~~ ~~한다는 特殊性 때문에~~
~~法院의 判決에 의할 수가 없고~~ ^{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精神障礙者와 反國家事犯 間諜罪~~
~~등으로 服役하고도 轉向하지 않는 共產主義者에 대해서는 法律~~
~~로 격려시키는 것이 보다 實效性이 있다는 면도 아울러 가지~~
~~고 있는 制度입니다.~~

따라서 이 憲法改正案에서는 이러한 問題點을 合理的으로 調

다양증독자나 재건직환자등의 경우와 같이 보안처분이 소의
성공의 관건이 그 재건상 적절치 못한 경우가 있을뿐 아니라

和하기 위하여 保安處分の 要件에 法律의 根據는 물론 適法한 節次에 따라 이루어진 保安處分이어야 할 것을 追加規定하였고
與野間의 改憲案協議過程에서도 保安處分은 法院의 判決에 의해야
한다는 精神과 趣旨를 保安處分에 관한 下位法에 明示 反映토
록 合意하여 身體의 自由에 대한 重大한 制限인 保安處分이
慎重히 運用되도록 努力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大統領의 任期를 4年으로 하고 1次에 限하여 重任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見解에 대하여 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大統領의 任期를 4年, 1次重任을 許容하자는 見解는 1次 任期중의 大統領의 治績을 評價 國民의 國政批判과 監視機會를 擴大할 수 있으며, 有能한 指導者를 다시 選擇할 수 있는 機會가 부여되고, 繼續的이며 一慣性있는 政策樹立이 可能하며 單任制에서 오는 行政府의 腐敗를 防止할 수 있다는 것을 前提로 民主正義黨을 除外한 3黨의 改憲案試案에서도 4年, 1次重任許容의 案 이었던 것은 여러 議員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過去 1次重任制가 長期執權으로 變質되었던 우리 憲政史의 不幸했던 經驗을 反省하고, 政黨政治에 있어서 새로운 指導者選擇에 의한 世代交替나 所信있는 國政遂行등 單任制의 長點을 살리며, 1次重任制가 갖는 人氣영합적 政策이나 選舉不正등의 폐단등을 고려하여 與野 協議過程에서 5年單任으로 合意되었던 것입니다.

單任制가 좋으나 1次重任制가 좋으나 하는 問題는 結局 憲法上的의 諸制度가 그나라 國民의 憲政史的 經驗의 產物이라는 點을 考慮할때 理解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現行制度와 같이 國會에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에 대한 解任決議權을 認定하자는 見解에 대하여 意見を 말씀드리겠습니다.

大統領制 아래서는 國會가 大統領에게 直接 責任을 물을 길이 없기 때문에 國務總理나 國務委員에게 責任을 묻는 不信任權을 認定 大統領을 牽制하게 되고, 大統領에게도 이에 맞서는 牽制 수단으로 國會解散權을 주게 되는바, 이경우 양견제수단이 그 비중과 均衡에 있어서 대등하지 못하고 國會解散權은 이를 濫用하거나 政治的 目的에 利用할 우려가 있는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습니다.

勿論 責任政治의 구현을 위하여 國務委員등의 不信任權을 國會에 부여할 필요성은 있으나 大統領의 國會解散權이 갖는 問題點을 勘案할때 철저한 3權分立의 原理가 적용되는 순수한 大統領制로 定着시키기 위하여서는 議院 內閣制的 要素로 除去해야 된다는 趣旨에서, 國會解散權과 國務委員등 解任議決權을 削除하고 그대신 國務委員등의 解任建議權만 規定하게 된 것을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憲法改正案은 國民의 民主化 意志와 우리 모두의 理想과 所望이 담겨지고 우리나라 自由民主主義의 새 歷史 創造의 계기를 이루는 기틀을 만들며, 앞으로 國民 모두의 지지와 尊重을 받을 憲法을 만들고자 마련된 與野 合意改憲案임을 다시 한번 強調드리고, 여러 議員님들의 절대적인 贊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本 議員의 贊成討論을 마치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